

제5주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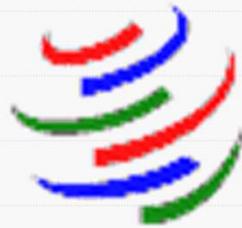


유 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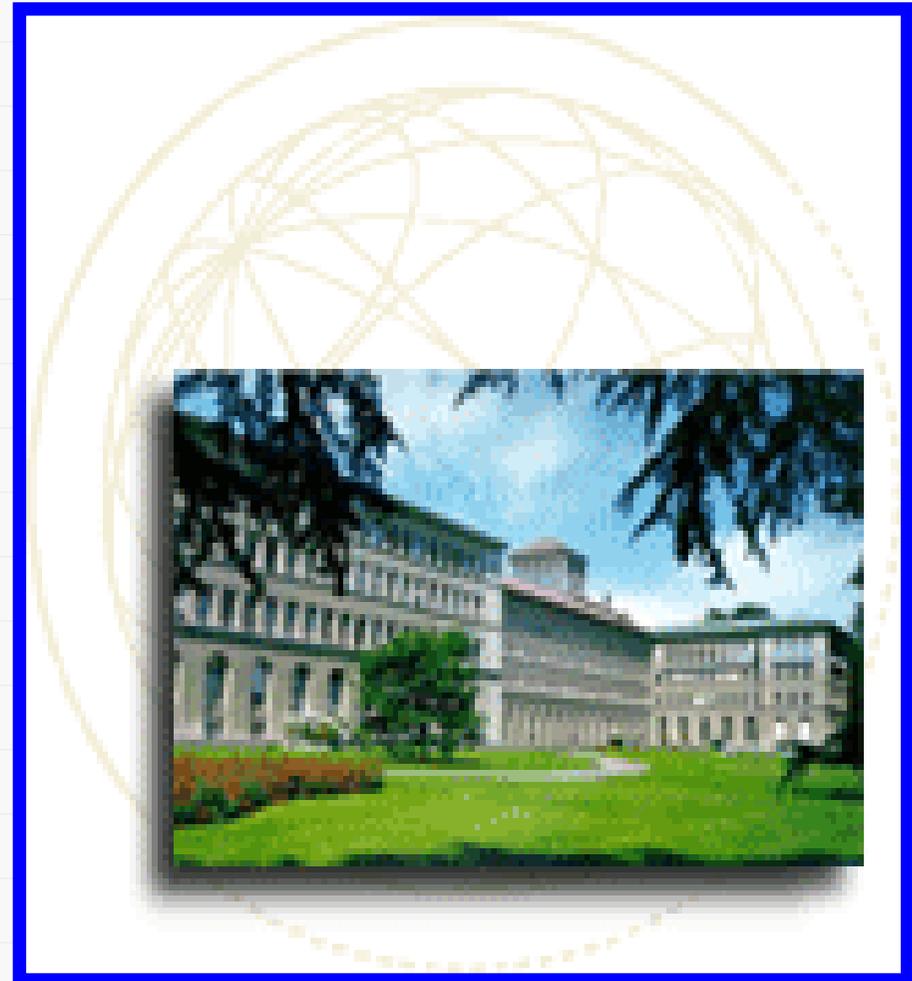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OMC





1. 개 관

- 명 칭 :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설 립 :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 회 원 국 : 153개국 (08.8월말 현재) 홍콩/마카오포함
(GATT : 128개국, 1994.12.31 현재)
- 본 부 : 스위스 제네바
- 예 산 : 약 1,379억 원, 2005년
- 목 적 :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 기 능
 - 다자간 무역협상 Forum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무역 분쟁 해결



WTO 체제의 출범

- - 📌 1994년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UR각료회의를 끝으로 7년 반을 끌어온 UR협상 마무리
 - 📌 전세계 125개국 참가, GATT의 한계극복,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효율적 규율을 목적으로 WTO를 설치하도록 합의(47년간 세계무역을 관할해 온 GATT체제의 종결)
- - 📌 국제무역에 관한 UN의 역할
 - 📌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과제 포괄, 법 제도 관행 명료화 제고
 - 📌 세계무역 증진
-



WTO의 기능

- - 📌 국제무역에 관한 다자적 규범의 제정
 - 📌 다자간 무역협상의 무대
 - 📌 회원국간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소
-
-



II. 성격

- 법인격 보유 : 법인격을 보유하고, WTO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 향유
- 포괄성과 규범성 : 상품무역, 서비스, 자본, 기술거래 등 국제경제활동의 주요부분을 거의 다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국제경제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를 '규범'의 논리로 대체
- 다자주의 : 세계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일방주의 또는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 : 자유무역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시장력을 남용하는 불공정관행들을 제거하는 공정무역정책을 가미



III. 기 능

1. 협정 이행

- 다자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
 - 모든 회원국 정부가 수락한 다자협정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각 회원국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접수하고 토의하는 장을 제공함.
 -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
 - 일부 회원국이 수락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상기와 유사한 활동 전개

2. 협 상

-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
 - 이미 GATT 및 UR 의제에 포함된 주제에 관한 다자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WTO 고유기능임.

- 이에 덧붙여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다자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 협상, 즉 기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제에 대한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할 수 있음.

3. 분쟁 및 정책검토

- 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
 -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
- 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
 -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2년, 4년, 6년) 검토함으로써 협정 이행을 증진

4.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력

- 세계경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IMF, IBRD 및 관련 산하 기구들과 협력



IV. WTO 체제의 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가. 최혜국 대우(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교역 상대국간 차별대우 금지
 - 특정국가에 대한 특혜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것
 - 예 : 특정 국가 A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
 -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
- MFN 대우의 예외
 - 자유무역협정
 -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 가능

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인과 내국민, 외국 상품과 내국 상품 간 동일한 대우 부여
- 내국민 대우의 예외
 - 자유무역협정
 - 불공정한 교역을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조치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의 완화를 통한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
 - GATT 창설이래 관세인하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 개최

WTO의 원칙

3. 예측가능성 보장 의무

- 1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의 기회에 대한 보다 명백한 전망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 2 따라서 어떤 나라가 자신의 양허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한 다음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량제한이나 기타의 무역제한 조치를 가하는 각국의 무역정책은 가능한 한 최대로 명확하게 공개(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두어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 검토하는 것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한 것이다.

4. 공정한 경쟁의 증진

- 1 GATT의 비차별 원칙이나 덤핑 및 보조금 규정 그리고 개별국의 규범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두 수입품과 국내품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 다른 WTO 협정들, 예컨대 정부조달협정도 공정한 경쟁을 규정하고 있다.



5. 개도국 우대의무

WTO 회원국 3/4 이상이 개도국 또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가장 가난한 최빈국에게는 WTO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수출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제공 및 WTO 규정 이행 기간의 연장 등을 타 회원국은 제공해야 한다.



<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

	GATT 체제	WTO 체제
성 격	○ 임시적이며 잠정적	○ 영구적
시장개방노력	○ 관세인하에 주력 ○ 비관세장벽은 동경라운드에서 철폐 노력 - 그러나 선언적인 규정정립 수준으로 실효성미흡	○ 관세 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 도입과 고관세율의 하향 평준화를 촉진 ○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화
관할범위	○ 상품 (주로 공산품)	○ 공산품 외에 농산물, 섬유류에 대해서도 포괄
신분야 협정	○ 없음	○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 제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 도입
규범강화	○ 보조금 정의 등 불명료 ○ 반덤핑 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	○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강화 (금지, 상계 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설정 등) ○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의 남용 방지 ○ 세이프가드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협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 ○ 분쟁해결 절차 강화



VI. 우리나라와 GATT/WTO

1. 가입

- 1967년 GATT 가입
- WTO에는 1995.1.1. 원 회원국으로 가입

2. WTO 가입배경

- WTO는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EC 등 일부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
 - 우리나라는 세계 제 11위 무역대국인 동시에 무역의존도가 GDP의 73%에 이룸
-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 EC, NAFTA, AFTA 등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국내 각종 무역관련조치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 기존의 각종 국내규정 및 새로운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국내의 비합리적인 제도·관행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화·개방화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WTO 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해 WTO 이행법 제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국내법령을 개정

3. 재정적 의무

- 2005년 분담금 : 3,995,838 스위스 프랑 (약 3.2 백만 달러) 회원국 중 13위, 분담율 2.4%
 - ※ 각국 분담률표는 제2부 VIII.사무국 단원의 4.예산 부분(p.) 참조
- 개도국을 위한 지원 : 2005. 3월 200,000 달러 (약 234,000 스위스프랑) 지원
 - 2001년 이래로 1,140,000 달러 (약 1,300,000 스위스프랑) 지원



WTO 조직

- I. 가입조건 및 절차
- II. 조직 개요
- III. 각료회의
- IV. 일반이사회 등 총괄기구
- V. 분야별 이사회 및 소관위원회
- VI. DDA 협상기구
- VII. 의사결정방식
- VIII. 사무국



1. 가입조건 및 절차

○ 가입조건

- 국가가 아니더라도 대외무역관계나 협정을 수행하는데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관세영역이면 가입 가능
- 홍콩은 non-State로서 가입하였고, 대만은 독자적인 관세영역으로서 WTO 가입
- 가입신청국의 대외무역제도나 관련정책에 대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장기간의 가입협상을 거쳐 각료회의의 2/3 다수결로 결정

○ 탈퇴

- WTO 회원국은 6개월전 통지로서 탈퇴 가능
- 회원국의 WTO 축출에 관한 규정 및 절차는 없음.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작업반 설치 및 작업반 의장 선출	
가입작업반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신청국에 대한 가입조건 협의 ↳ 가입신청국은 자국의 대외무역체제를 설명하는 문서제출 	
양자간 양허교섭	
- 가입신청국과 작업반참가국간 상품 및 서비스분야 협상	
일반이사회/각료회의의 가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2/3 다수결 ↳ 가입수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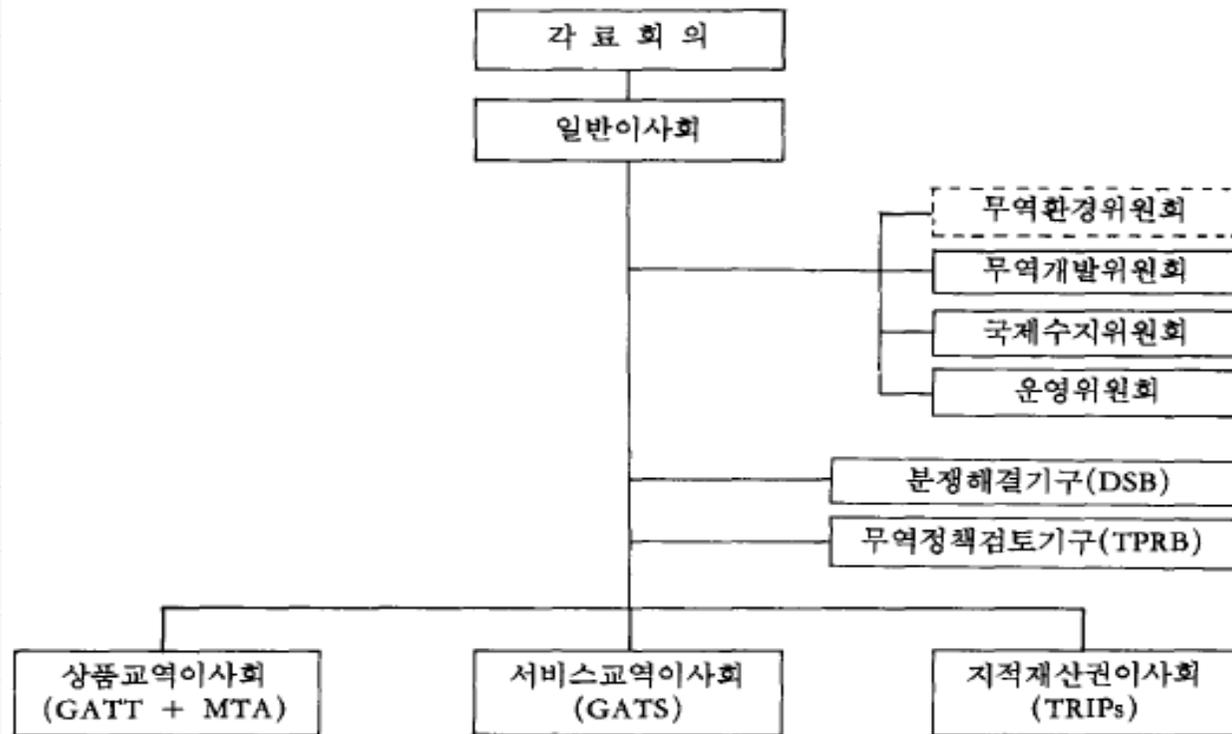


참조

- 일반이사회에 보고또는 일반이사회 부속기관
- 분쟁해결기구에 보고
- ⋯⋯⋯ 복수국간 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복수국간 협정 관련 위원회는 그 활동을 일반이사회나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
- ⋯⋯⋯ 무역협상위원회가 일반이사회에 보고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 개최되기도 한다.

〈圖 3〉 WTO 組織의 構造



III. 각료회의

1. 구성

- 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

2. 기능

-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권한을 보유(최고 의사결정기관)

3. 개최 실적 및 주요 결과

- 최소 2년에 1회 개최

IV. 일반이사회 등 총괄기구

1. 일반이사회

-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
- 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의 기능 수행
-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1년중 6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됨)
- 일반이사회는 WTO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

2. 분쟁해결기구

- 분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의 판정내용 또는 상소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
- 패널의 판정결과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감시,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패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보복조치 승인

3. 무역정책검토기구

-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
-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하며, 각료회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의사규칙도 승인

V. 분야별 이사회 및 소관 위원회

-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를 일반이사의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 필요에 따라 개최
-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 일반이사의회의 옵서버 국가들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가능, IMF, UNCTAD 등 국제기구도 옵서버로 참여

1. 상품무역이사회

- WTO 협정 부속서 1A의 다자간 무역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
- 산하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등 임명
- 각종 산하 위원회, 작업반 보고 검토, WTO 9조에 따른 Waiver 검토 등
 - 전자상거래, 섬유 등 산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의 운영을 감독
-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검토
- 최근 지리적표시 보호,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최빈개도국의 의약품 수입을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 문제, 위반제소 적용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3. 서비스무역이사회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운영을 감독
- 제2조(MFN) 면제와 관련한 사항 검토
- 최근 통신, 관광,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한 논의가 활발

4. 기타 위원회 및 작업반

가. 무역환경위원회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94년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 상의 10가지 의제 (모두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의제로 크게 시장접근문제와 다자간 환경협약과 무역 협약간의 연계에 대한 것으로 구분됨)를 논의하고 있음.

나. 무역개발위원회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 개발도상국 특혜조항의 이행방법, 개도국의 세계 무역 체제 참가 유도, 기술 협력, 소규모 국가에 대한 고려, 전자상거래의 개발, 최빈국의 시장접근에 대한 입장조사 등 기능 수행
- 최빈개도국 소위원회(sub-committe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 최빈개도국을 다자무역체제에 통합시키는 작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업무 및 WTO 협정의 최빈개도국 특혜조항 이행 감시

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 1996년 2월 일반이사회 결정에 의해 신설
- 특혜적 성격을 갖는 양자적, 지역적, 복수국간 무역협정 및 이의 운영을 검토하고 이들 협정이 다자무역체제에 끼치는 체계적 의미를 연구
- 지역적 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측면 논의



라. 국제수지위원회

- 잔존하는 국제수지 관련 규제의 점진적 철폐 및 기술적 지원 등

마. 예산행정위원회 (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 기여금 산정, 비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기여금 관리, 성과 보상 프로그램 (Performance Award Programme), 외부 감사(External Auditors) 선정 등 사무국 행정 업무

바. 가입작업반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 WTO 가입을 신청한 국가에 대해 국내법의 WTO 규범 합치 여부 등 가입 조건을 다자차원에서 협의

사. 무역·부채·금융 작업단 (Working Group on Trade, Debt and Finance)

- 무역, 부채, 금융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개도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체제 기여방안을 모색하는 일반이사회 산하의 작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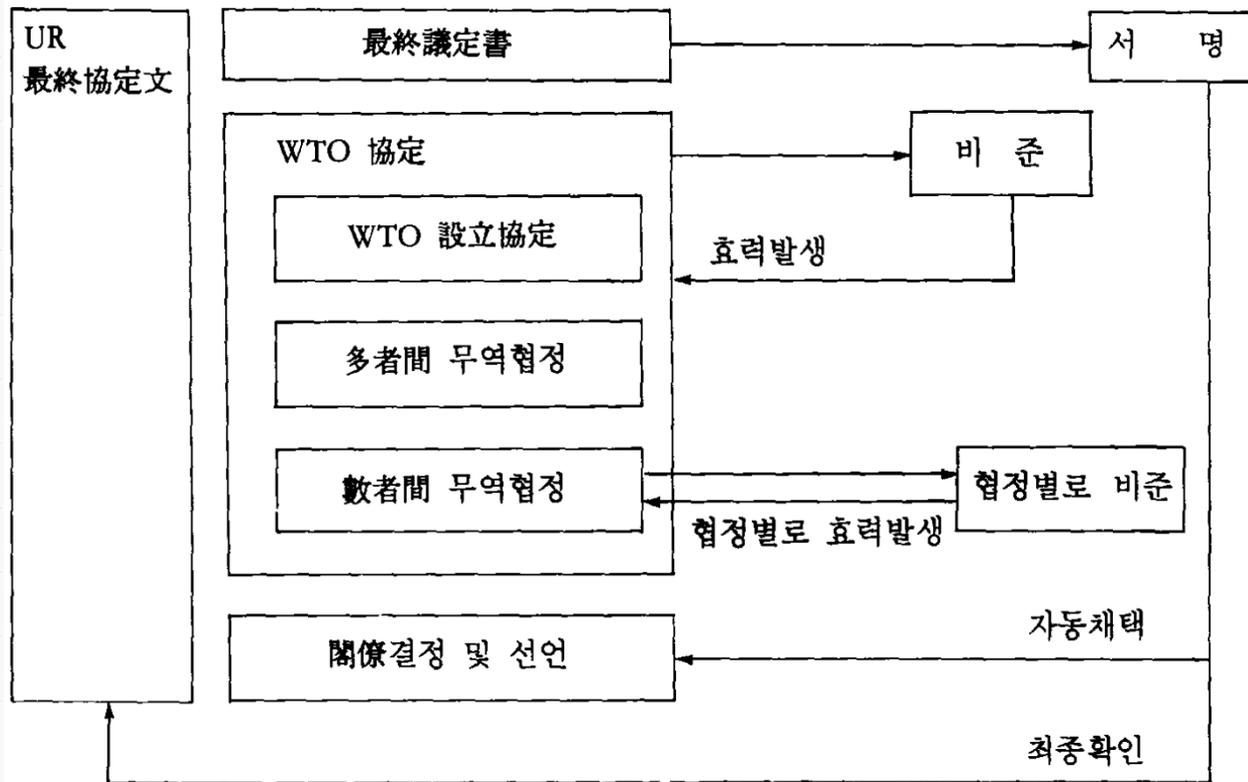
아. 무역·기술이전 작업단 (Working Group on Trade and Transfer of Technology)

- 개도국에게로의 기술이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이사회 산하의 작업반

UR 협정문의 구성

- 최종의정서 : UR협정결과에 대한 확인, 향후절차
- WTO협정문 : 전문, 16개 조항의 본문, 부속서(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 4개의 복수간 무역협정, 23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

〈圖 1〉 UR 最終協定文의 構成





최종의정서

- UR협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
 - 즉. 최종의정서 및 이에 첨부된 WTO협정, 각료결정 및 선언, 금융서비스 자유화 약속에 관한 양해 등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임
 - 의정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 WTO협정을 자국의 비준절차에 회부하고
 - 각료결정 및 선언들을 채택함에 합의 한다는 것을 의미함
 - WTO협정은 전체적으로 수락하도록 개방함
 - 다만 복수간 협정은 원하는 분야만 가입 가능



WTO협정문

설립 및 목적 :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 받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WTO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 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

WTO 협정의 범위

WTO 협정은 WTO 설립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동경 MTN협정, 새로운 다자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분쟁해결관련 양해, 무역정책 검토제도, 다자간 무역협정들로 되어 있음(그림 참조)

〈圖 2〉 WTO 協定文의 構成

